

#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조정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8245
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7. 27.

발의자 : 조정식 · 민홍철 · 임종성

정성호 · 박주민 · 이원욱

장병완 · 전현희 · 박정

윤관석 · 노웅래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써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.

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,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21조 및 제23조).

##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거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 중 “3천만원 이하의 벌금”을 “5천만원 이하의 벌금”으로 한다.

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천만원 이하의 벌금”을 “3천만원 이하의 벌금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